중 국

[판례 분석]
영업상 부가서비스의 상영권 침해와 손해배상 판단

2026. 11. 11.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족욕·안마 등 영업장에서 시청각저작물을 무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이 주된 영업의 대가에 반영된다면 무단 상영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 이때 그 손해배상액은 실제 재생 횟수가 아닌 공개 상영이 가능한 객실 수를 기초로 영업 특성과 침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1인 회사의 유일한 주주가 회사 재산의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1. 현황

중국의 족욕·안마 등 서비스업에서는 고객 유치와 이용 경험의 다양화를 위하여 본래의 서비스에 영화 관람, 노래방, 식음료 등을 결합하는 복합형 영업방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업소에서는 족욕과 영화 관람, 노래방 또는 식음료를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업소는 간단한 식사 및 차·과일 등을 별도의 요금 없이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영업방식은 족욕·안마 등 주된 서비스에 다른 편의·오락서비스를 결합하여 고객의 방문과 이용을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음. 특히 노래방이나 영화 관람 등의 부가서비스는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주된 영업의 일부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시청각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여부가 저작권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음.

본문에서는 족욕·안마 영업장에서 제공한 노래방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분쟁사례를 통해 영업장에서 무료 부가서비스에 사용된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6)湘0406知民初417号
	2심	(2026)湘04知民终42号

관할 법원	1심	후난성 헝양시 옌펑구 인민법원(湖南省衡阳市雁峰区人民法院)		
	2심	후난성 헝양시 중급인민법원(湖南省衡阳市中级人民法院)		
당사자	A 협회		1심: 원고	2심: 피상소인
	B 회사, C 씨		1심: 피고	2심: 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A 협회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B 회사가 A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3. B 회사의 법적 책임 4. B 회사의 유일한 주주로 등록된 C 씨가 B 회사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2심	1. B 회사가 A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2. 1심 법원이 판단한 배상 금액의 적절성 여부 3. B 회사의 유일한 주주로 등록된 C 씨의 B 회사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 판단의 적절성 여부		
판결 결과	1심	1. A 협회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B 회사는 A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음. 3. B 회사는 A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59,174위안을 배상해야 함. 4. B 회사의 유일한 주주로 등록된 C 씨는 B 회사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함.		
	2심	상소기각, 원심유지		
관계 법령	・저작권법(著作权法) 제3조 제6호,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52조, 제54조 ・회사법(公司法) 제23조 제3항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6조, 제7조, 제25조, 제26조			
최종 판결일	2026년 8월 15일			

(1) 사건 개요

A 협회는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집중관리하는 단체로서 D 회사, E 회사, F 회사, G 회사와 체결한 저작권 수권 계약에 따라 이들 회사가 권리를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은 시청각저작물의 상영권, 복제권을 관리하고 자기 명의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A 협회가 관리하는 시청각저작물(이하 "사건 저작물"이라 함)에는 <동화(童话)>, <전대정가(电台情歌)>, <홀연지간(忽然之间)> 등 33곡이 포함되어 있음.

C 씨가 유일한 주주로 등록된 B 회사는 족욕·안마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업장 내 객실에서 노래방 반주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A 협회는 B 회사 영업장의 노래방 반주기에서 사건 저작물 33건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고 B 회사가 A 협회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건 저작물을 사용한 행위가 A 협회의 상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① 원고의 주장

A 협회는 B 회사가 허락 없이 영업장의 노래방 반주기를 통해 사건 저작물을 상영하여 상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B 회사가 1인 회사이므로 유일한 주주인 C 씨 역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② 피고의 주장

이에 B 회사와 C 씨는 B 회사의 주된 영업이 족욕·안마이고 객실 내 노래방 서비스는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 부가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전문 KTV 영업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항변함. 또한 B 회사는 일부 객실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고 실제 재생 횟수와 영업수익도 적으므로 객실 31개 전체를 기준으로 하루 2.2위안의 배상액을 산정한 1심 법원의 배상금 산정방법은 부당하다고 항변함.

한편 C 씨는 자신이 이미 B 회사의 실제 경영에서 물러났고 A 협회가 회사와 개인의 재산 혼동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③ 핵심 쟁점

상기한 양 당사자의 주장과 항변 및 2심 법원이 명시한 쟁점을 종합하면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a. B 회사의 행위가 A 협회가 관리하는 상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b. 침해 기간, 객실 수, 배상기준 등에 의한 배상금 산정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c. C 씨가 B 회사의 저작권 침해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1) 상영권 침해 여부

[요약] B 회사가 별도의 상영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영업장에서 불특정 소비자에게 사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재생한 행위는 족욕 서비스의 대가에 반영되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여 이는 합리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영권 침해가 성립함.

<저작권법> 제3조 제6호에 따라 사건 저작물이 시청각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함. 또한 A 협회는 적법하게 설립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서 D 회사, E 회사, F 회사, G 회사 등으로부터 사건 저작물의 상영권에 관한 관리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자기 명의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A 협회가 제출한 조사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25일 B 회사의 영업장에서 노래방 반주기로 재생된 33곡이 A 협회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 저작물과 재생 화면 및 내용 등에서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됨.

객실 내 노래방 서비스는 무료 부가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B 회사의 주장에 대해 B 회사의 주된 영업은 족욕·안마이고 사건 저작물의 상영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받지는 않았으나 노래방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영업수익이 족욕 서비스의 대가에 반영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상영행위는 사적 이용이 아니라 상업적 영업활동에서 이루어진 공개적 전파행위로서 합리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A 협회가 관리하는 상영권을 침해함.

2) 배상금 산정기준 및 배상금의 적절성

[요약] B 회사의 침해행위는 장기간 운영되는 영업장에서 노래방 반주기를 통한 지속적인 공개 상영행위에 해당하며 노래방 반주기 구매계약을 기초로 침해 기간을 853일로 인정함. 또한 실제 객실 이용률이나 재생 횟수가 아닌 공개 상영이 가능한 객실 31개를 기준으로 하되 B 회사의 영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객실당 하루 2.2위안의 배상기준을 적용함.

① 침해 기간의 인정

침해 기간의 판단 과정에서 B 회사가 제출한 <노래방 반주기 제품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B 회사는 2022년 7월 21일 노래방 반주기를 구매하였고 계약상 설치기간은 5일 이내로 정해져 있었음.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침해 기간을 2022년 7월 26일부터 2024년 11월 25일까지 총 853일로 인정함.

또한 B 회사의 영업장이 장기간 운영되는 영업장이고 사건 침해행위는 노래방 반주기를 통한 지속적인 시청각저작물의 공개 상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A 협회가 제출한 증거는 조사 당시 B 회사의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함. B 회사가 중도에 영업을 중단한 사실과 구체적인 중단 기간을 증명할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조사일로부터 과거 3년간 침해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다만 1심 법원은 B 회사가 제출한 노래방 반주기 구매계약과 설치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침해 기간을 853일로 인정하였는데 그 판단

이 정당하다고 봄.

나아가 노래방 반주기 제조업체가 원격으로 일부 곡을 삭제하거나 재생 권한을 조정하였더라도 노래방 반주기 전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며 개별적으로 분산된 재생행위도 장기간 계속된 영업상 이용 상태를 구성할 수 있음. 따라서 1심 법원이 인정한 853일의 침해 기간을 유지함.

②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객실 수

본 안건에서 1심 법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B 회사의 영업장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KTV 객실 31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음.

이에 대하여 B 회사는 일부 객실이 장기간 폐쇄·방치되어 노래방 반주기 설비가 없거나 영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나머지 객실도 이용률이 낮으므로 전체 객실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 이용허락료가 객실 단위로 산정되고 그 대가가 영업장 내에서 사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응하는 것이지 실제 객실 이용률이나 재생 횟수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님. 그 외에도 B 회사는 일부 객실이 장기간 폐쇄되거나 노래방 반주기 설비 없이 운영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주장은 현장조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음.

따라서 B 회사는 입증 부족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객실 31개를 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1심 판단을 유지함.

③ 배상기준의 결정

A 협회는 객실당 하루 4위안의 저작권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해당 기준이 A 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법률상 강제력이 없으며 배상기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회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소비습관과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KTV 업계의 전반적인 영업 부진, B 회사의 영업 범위, 침해 기간, 영업장 규모와 수준 및 소재지, B 회사가 전문 KTV 영업장이 아니라 족욕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객실당 하루 2.2위안의 배상기준을 적용함.

이에 대해 1심 법원이 B 회사의 영업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 KTV 영업장보다 낮은 배상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준이 관련 업계 및 지역의 실제 상황과 유사 사건의 판단기준에 부합하므로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함.

④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1심 법원은 인정된 침해 기간 853일, 객실 31개, 객실당 하루 2.2위안을 기준으로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여 산출액 58,174.6위안 중 58,174위안을 배상액으로 인정함. 또한 A 협회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비용 336위안에 관하여 지급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권리구제 비용 4,200위안에 대해서는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함. 다만 1심 법원은 변호사 선임, 교통·숙박 및 조사·증거수집 등에 실제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A 협회가 유사 사건을 대량으로 제기한 경

우 관련 비용을 사건별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비용 1,000위안을 인정함.

이에 대해 침해 기간, 객실 수, 배상기준에 관한 1심 판단이 정당하고 합리적 비용 역시 사건의 실제 상황 및 유사 사건의 판단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B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 58,174위안 및 합리적 비용 1,000위안, 총 59,174위안의 1심 법원의 배상액을 유지함.

3) 1인 회사 주주의 연대책임 여부

[요약] B 회사는 C 씨가 유일한 주주인 1인 회사이고 C 씨는 회사 재산이 자신의 재산과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며 C 씨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였는지는 법정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 씨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

<회사법> 제23조 제3항은 주주가 1명인 회사에서 해당 주주가 회사 재산이 자신의 재산과 독립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B 회사가 자연인 1명이 주주인 유한책임회사이고 C 씨가 그 유일한 주주라는 사실이 확인됨. 또한 C 씨가 B 회사의 재산이 자신의 재산과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함.

이에 C 씨는 A 협회가 회사와 개인 사이의 재산 혼동을 증명하지 못하였음에도 1심 법원이 자신에게 재산 독립성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또한 자신이 이미 B 회사의 실제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항변함.

그러나 C 씨가 유일한 주주로서 회사 재산의 독립성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A 협회가 B 회사가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영업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음. 또한 C 씨가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회사법>에 규정된 연대책임의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따라서 C 씨에게 B 회사의 저작권 침해 관련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함.

3. 판례분석

1)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청각저작물 상영의 상업적 및 침해책임

① 판단기준

본문 판례에서 2심 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업장에서 시청각저작물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공개적으로 재생하는 행위가 상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이때 저작물의 상영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가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제공되고 그 경제적 이익이 주된 서비스의 대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상업적 영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위로서 사적 이용이나 합리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② 판단방법

법원은 B 회사가 족욕·안마를 주된 영업으로 하면서 객실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별도의 요금 없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해당 서비스가 주된 영업에 부수하는 부가서비스로 제공되고 그 경제적 이익이 족욕 서비스의 대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 사건 저작물의 상영행위를 사적 이용이 아닌 상업적 영업활동에서 이루어진 공개적 이용행위로 판단함. 이에 B 회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노래방 반주기를 통해 사건 저작물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공개적으로 재생한 행위가 상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또한 B 회사는 정식으로 구매한 노래방 반주기에 저작물이 사전 탑재되어 있었고 자신에게 주관적인 침해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B 회사의 상영권 침해책임을 인정함.

③ 법적 중요성

이러한 판단은 저작물이 주된 영업에 부수하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더라도 그 이용행위의 상업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사업자가 개별 서비스에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영업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서비스에 수반되는 저작권 침해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저작물 이용행위와 전체 영업활동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또한 노래방 반주기의 구매와 해당 기기에 포함된 저작물을 영업장에서 상영하기 위한 권리 확보는 구별되는 문제임. 이는 기기 공급업체와의 거래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영업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필요한 권한까지 당연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저작물의 공개 상영 가능성과 영업 특성을 반영한 손해배상액 산정

① 판단기준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시청각저작물의 객실 단위 이용허락료가 실제 객실 이용률이나 개별 노래의 재생 횟수가 아니라 영업장에서 해당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응한다고 판단함.

또한 객실당 배상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면서 영업장의 업종, 침해 기간, 영업 규모와 수준, 지리적 위치 및 관련 업계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였으며 해당 배상단가가 업계와 지역의 실제 상황 및 유사 사건의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함.

② 판단방법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객실 수와 객실당 배상단가를 구분하여 판단함. 객실 수에 관해서는 1심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31개 객실을 기준으로 삼고 일부 객실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B 회사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현장조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또한 객실당 배상단가에 관해서는 A 협회가 주장한 하루 4위안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B

회사가 전문적인 노래방 영업장이 아니라 족욕·안마를 주된 영업으로 한다는 점과 관련 업계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루 2.2위안으로 결정함.

이에 법원은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객실 31개와 침해 기간 853일을 기초로 하되 B 회사의 영업 특성을 반영한 객실당 하루 2.2위안의 배상단가를 적용하여 경제적 손실을 58,174위안으로 인정함.

③ 법적 중요성

이러한 판단은 저작물의 이용허락료 산정단위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객실 단위의 이용허락료 체계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활용하면서도 권리자가 제시한 이용료 단가에 구속되지 않고 침해 영업장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배상액을 결정함. 이는 저작권 이용허락료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중국 <저작권법> 제54조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음. 또한 실제 객실 이용률이나 노래 재생 횟수가 아닌 공개 상영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실 수를 산정한 것은 개별 객실의 이용실적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따라서 본문 판례는 실제 이용횟수의 개별적 입증이 어려운 영업상 저작물 이용에서 공개 상영 가능성과 영업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로 볼 수 있음.

4. 시사점

본문 판례는 주된 영업의 부가서비스로 시청각저작물을 무료 상영한 사건에서 별도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노래방 반주기를 정식 구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영권 침해책임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개 상영이 가능한 객실 수와 영업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유일한 주주가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의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6)湘04知民终42号